

# 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

윤자영\*\*

## I. 머리말

어느 사회나 개인의 일상생활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현재 및 다음 세대 노동력을 재생산 하는데 가정에서 수행하는 무급의 가사 및 돌봄노동의 역할이 크다. 특히 무급 가사 및 돌봄노동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시장노동을 병행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가족과 여성이 전담해 온 돌봄노동의 경제적 기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무급 돌봄노동은 시장경제 영역 밖에 존재하며 '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비가시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무급으로 제공되었던 돌봄노동이 시장과 공적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그 정책적 함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돌봄노동 관련 정책의 효과를 가늠하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출의 부담을 전망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작업이다. 무급 돌봄노동의 실태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해 없이는 남녀, 국가, 시장, 공동체 등 각 경제주체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데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Abraham and Mackie, 2004; Folbre, 2008; UNECE, 2017).

'돌봄'이라는 용어는 성별 분업의 원인이자 결과를 분석하는 주된 개념이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인다. 돌봄은 보통 여성의 노동시간을 상당 부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무급 돌봄노동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무급 돌봄노동은 광범위한 차원의 '돌봄 경제'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돌봄 경제는 자녀나 부모를 위한 지출, 유급 돌봄노동, 가족과 친구 이웃 등의 무급 돌봄노동을 모두 포함한다. 돌봄 경제 안에서 여성은 가족 내 무급 돌봄노동에

\* 이 글은 현재 연구 진행 중인 장지연 외(2020),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중 제2장의 내용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jayoung@cnu.ac.kr).

특화하고 남성은 시장 소득을 벌어들이는 책임을 지는 형태를 띤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듯이 보이지만 여성은 가정과 사회 안에서 협상력이 약한 존재로 남게 된다.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고 평가될 수 있다. 돌봄노동은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모나 부모를 돌보는 자녀의 직접적인 시간 지출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러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임금이나 평생소득의 상실인 기회비용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돌봄노동을 하느라 포기해야만 했던 다른 유의미한 활동의 가치를 의미할 수도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시간 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총비용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Yoon(2014)에 의하면 아동과 노인을 위해 가족이 제공하는 돌봄노동의 가치는 이 집단에 대해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 지원액을 능가한다.

이 글은 통계청이 2019년에 조사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세 이상 성인의 돌봄노동시간과 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2018)은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조사된 무급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관련 행동에 할애된 시간을 모두 '무급 가사노동'으로 개념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 본 연구는 무급 가사노동 일반이 아닌 돌봄노동을 개념화하고 정의한 최근의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무급 돌봄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

## II. 분석자료와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무급 돌봄노동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이 조사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이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여가, 가사 및 돌봄노동 등의 활동 영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간사용 실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UNDP의 권고로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다. 2019년 생활시간 조사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12,435가구의 약 29,000명에게 연속 이틀의 시간일지를 10분 단위로 작성하도록 했다.

시간사용조사를 사용하여 무급 돌봄노동시간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연구는 국내외에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며 UN은 통일된 방법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UNECE, 2017). 시간을 측정하는 조사자료 가운데 시간일지법(time diary method)은 시간량에 관한 양식화(stylized)된 질문<sup>1)</sup>에 기초한 조사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1) 예를 들어 '자녀를 돌보는 데 일주일에 몇 시간을 쓰십니까?'라고 질문하기도 한다.

(Juster and Stafford, 1991).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시간일지에 응답된 행동범주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관련 행동을 돌봄노동시간으로 정의하고, 그 시간과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 추정의 방법은 먼저 ① 돌봄노동을 정의하고, ② 돌봄노동시간량을 추정한 다음, ③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돌봄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느냐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는 돌봄노동을 정의하기 위하여 시간사용조사에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에 해당하는 행동범주를 그대로 돌봄노동으로 정의하거나, '제3자 원칙'을 사용하여 돌봄노동에 해당하는 행동과 시간량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제3자 원칙'에 따르면, 여러 무급의 시장 밖 활동 중에서 특정 행위가 본인이 아닌 제3자를 고용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소비할 수 있는 경우 '노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Reid, 1934). 제3자 원칙은 그 행위가 행위자에게 활동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효용, 즉 심리적 보람과 기쁨을 야기하는지 상관 없이 '결과물'을 중심으로 개념화하는 방법이다(Folbre, 2008). 전통적인 노동경제학에서 '노동'과 '여가'가 행위 과정에서의 행위자에게 효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로 구분되는 것과 대비된다. 제3자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돌봄노동 정의와 측정은 특정 조사 자료의 질문과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1999년 이후 여러 차례 조사를 거치면서 가구와 가구원 해당 질문 내용뿐만 아니라 시간일지 조사내용에서도 많은 변화를 거쳤다. 이를 연속 10분 단위의 시간일지를 기입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행동범주가 보다 세분화되고 조정되었다. 본 연구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범주 가운데 다음과 같은 행동을 무급 돌봄노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직접 돌봄노동'과 '간접 돌봄노동'으로 구분하고, '간접 돌봄노동'을 다시 '간접돌봄노동 1'과 '간접돌봄노동 2'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직접 돌봄노동'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0세 미만 아동 돌봄', '10세 이상 아동 돌봄', '장기돌봄 필요 성인 돌봄', '독립적인 성인 돌봄' 행동 관련 시간을 포함한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응답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를 질문하며, 돌봄 필요 사유는 돌봄 불필요, 치매, 뇌졸중(중풍), 시각·청각·언어 장애, 걷기 등의 육체적 제약, 기타 돌봄 필요를 포함한다. 이 질문을 사용하면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돌봄노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간접 돌봄노동'은 가사노동시간의 일부 및 자녀와 함께 한 시간을 포함했다. '간접 돌봄노동 1'은 무급 가사노동시간의 일부를 포함한다. 타인을 돌본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 관련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돌봄노동의 경우 돌봄대상자만을 위한 노동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가사노동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원에게 그 혜택이 공유되므

〈표 1〉 돌봄노동 정의

유형	내용	행동분류
직접 돌봄노동	10세 미만 아동 돌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신체적 돌보기 간호하기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봐주기)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 아이와 놀아주기, 스포츠 활동하기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 기타 돌보기
	10세 이상 아동 돌봄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장기돌봄 필요 성인 돌봄	장기돌봄 필요 성인 돌보기
	독립적인 성인 돌봄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이동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관련 이동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관련 이동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관련 이동 장기돌봄 필요 성인 돌보기 관련 이동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관련 이동
간접 돌봄노동 1	자가서비스를 위한 일	자가소비를 위한 일
	주거 등 관리	가정관리
	식사요리	음식준비
		식사준비
	설거지	간식 · 비일상적 음식만들기
		설거지 · 식후정리
	세탁수선	의류관리
		세탁하기
		세탁물 건조 다림질 및 옷정리 의류수선 및 손질
	청소	청소 및 정리
청소 정리 쓰레기 분리 및 버리기		
주거 등 관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및 유지	
구매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상품매장 쇼핑 상품 온라인 쇼핑 서비스 현장 구입 서비스 온라인 구입 기타 쇼핑 관련 행동	
주거 등 관리	기타 가정관리	
이동	가정관리 관련 이동	
간접 돌봄노동 2	가사 및 돌봄노동 이외 활동	10세 미만 (손)자녀와 함께 한 행동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19」.

로 한 개인의 모든 가사노동시간을 타인을 위한 돌봄노동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다. 생활시간조사는 특정 행동을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묻지 않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 가운데 타인을 위해 투입한 시간을 분리하기가 어렵다. 2인 이상의 가구에서 가사노동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띤다. 예를 들어 식사준비나 청소의 결과물인 한 끼의 식사와 깨끗한 거실은 전체 가족이 함께 소비할 것이다. 본 분석은 가사노동시간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동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를 적용하고, 가사노동시간의 일부만을 돌봄노동시간으로 산정했다. 즉  $x$ 명의 돌봄대상자가 있는  $n$ 인 가구의 어떤 개인이  $y$ 시간의 가사노동시간을 투입했다면  $y$ 를 루트  $n$ 으로 나누고  $x$ 를 곱해서 가사노동시간의 일부만 돌봄노동시간으로 계산한다. 가사노동 중에 자가소비를 위한 가사노동은 제외하려는 시도이지만 가사노동시간에 적용하는 동등화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가사 및 돌봄노동 관련 행동에 투입된 시간만을 시간량으로 집계하면 돌봄노동을 과소추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행동’ 분류에 기반하여 돌봄노동시간을 정의하는 문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시간사용조사는 응답자가 특정 행동을 하는 동안 14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 ‘당신이 돌보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가(Was there a child in your care)?’를 조사한다. 이러한 질문은 ‘행동’ 중심으로 자녀 돌봄시간을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간접 돌봄노동시간을 최대한 식별해내기 위한 것이다. 돌봄노동이란 것이 직접적인 돌봄 관련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자녀에 대해 언제라도 돌봄을 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근접성과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llard et al., 2007; Schwartz, 2001). 미국 시간사용조사를 활용한 연구들은 자녀 돌봄노동시간을 추정할 때 직접 돌봄노동과 간접 돌봄노동시간도 함께 분석한다(Chesley and Flood, 2017; Suh and Folbre, 2016).

시간사용조사가 아무리 철저하게 돌봄노동 관련한 행동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돌봐야 할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응답자의 일상생활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Budig and Folbre, 2004).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녀가 갓난아이라면 여가 생활을 하더라도 집중력을 요구하는 책을 보는 대신 TV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동을 ‘함께 한 사람’이 10세 미만 자녀에 해당되는 경우의 시간을 ‘간접 돌봄노동 2’로 정의했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어떤 행동을 누구와 ‘함께 했는지’ 조사했다. ‘함께 한 사람’은 ‘공간을 같이 하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주된 행동을 같이 한 사람’이다. 함께 한 사람의 인식 대상은 응답자가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도 나를 아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함께 한 사람은 6개 항목으로 조사했는데, 이는 혼자, 배우자, 만 10세 미만(손)자녀, 만 10세 이상(손)자녀, 부모, 형제자매/기타 가족, 기타 아는 사람 등이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간접 돌봄노동 2’는 여가나 문화활동, 교제활동 등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포함했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는 수면시간 중에는 함

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는데, 돌봄대상자가 어린 자녀나 치매 노인, 장애인인 경우 함께 자면서 자는 동안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간도 간접 돌봄노동시간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려워 간접 돌봄노동시간은 과소추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 개인이 돌봄노동에 투입한 시간을 추정하는 다음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다. 보통 무급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은 투입법(input approach)과 산출법(output approach)이 있다. 투입법은 시간의 양을 측정하고 투입된 시간에 임금을 적용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산출법은 무급 노동시간의 가치를 산출물의 가격에서 중간투입물을 뺀 것, 즉 부가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도출한다. 무급 노동시간의 생산성을 감안하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출법이 우월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무급 생산에서 노동시간보다 산출물을 측정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점 때문에 보통 투입법을 사용하고 있다(Goldschmidt-Clermont, 1993).

돌봄노동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투입법은 기회비용법과 대체비용법으로 나뉜다. ‘기회비용법’은 타인을 돌보는 데 투입한 시간을 돈 버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벌었을 것인가라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이 방법은 기회비용 개념에 기반을 둔 것인데, 개인의 시간 배분이 효용 극대화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 방법은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으며, 돌봄노동 제공자의 기회비용인 시장임금을 가치평가의 잣대로 삼는다. ‘대체비용법’은 돌봄노동을 하는 사람이 직접 돌봄노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서비스를 타인에게 제공했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라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Folbre, 2008; UNECE, 2017). 이 방법은 사회의 입장에서 평가한 돌봄노동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며, 돌봄노동의 시장대체제의 가격, 즉 시장에서 돌봄노동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가치평가의 잣대로 삼는다.

어떤 시장대체제 가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일반인 대체비용법과 전문가 대체비용법이 있다. 전문가 대체비용법은 대체직종의 시장임금을 적용시켜 전체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무급 노동을 각각의 활동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직업인(specialist 또는 개별기능별 전문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무급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개별 업무능력이 전문가만큼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 때문에 가치를 과대평가한다. 일반인 대체비용법은 무급 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응할 만한 직업인을 고용한다고 가정한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선택한 대체직업은 가사관리사와 총괄관리자이다(Folbre, 2008; UNECE, 2017). 기회비용법과 대체비용법 모두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을 적용하는데, 서비스업 종사 여성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이미 여성의 일은 자연적이고 숙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차별적인 임금결정과정을 거친 것이다(England et al., 2002). 따라서 이들

의 임금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돌봄노동의 가치가 이중으로 저평가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사회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체비용법’을 적용하여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 대체서비스의 임금률은 행위자의 성별과 인적자본, 생산성이나 서비스의 질 등 특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노동자의 ‘평균’ 임금률을 적용했다. 본인이 직접 돌봄노동을 하지 않고 대체서비스를 사용할 때 대체서비스 노동자의 성별을 특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통계청(2018)은 식사준비 시간에 전문가 대체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할 때 남성에게는 남성의 시장노동 평균 임금률, 여성에게는 여성의 시장노동 평균 임금률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동일한 식사준비 시간에 대해 시장임금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남성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다. 가사노동의 일반적인 생산성을 고려할 때, 남성의 식사준비의 시간의 생산성이 여성의 그것보다 더 높다는 가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표 2〉 대체비용법 가치 평가

(단위 : 원)

	일반인 대체비용법		전문가 대체비용법	
	직종	임금률	직종	임금률
자가소비를 위한 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12,348	농림어업 관련 단순종사원	12,299
식사요리	가사 및 육아도우미	12,348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12,430
설거지	가사 및 육아도우미	12,348	음식 관련 단순종사원	11,591
세탁수선	가사 및 육아도우미	12,348	섬유 및 가족관련 기능종사자	13,263
청소	가사 및 육아도우미	12,348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1,968
주거 등 관리	가사 및 육아도우미	12,348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7,964
구매	가사 및 육아도우미	12,348	판매 관련 단순종사원	12,107
10세 미만 아동 돌봄	가사 및 육아도우미	12,348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8,420
10세 이상 아동 돌봄	가사 및 육아도우미	12,348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8,613
돌봄 필요 성인 돌봄	가사 및 육아도우미	12,348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8,420
독립적인 성인 돌봄	가사 및 육아도우미	12,348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8,420
이동	가사 및 육아도우미	12,348	자동차 운전원	13,890
가사노동	최저임금	8,350	최저임금	8,350
독립적인 성인 돌봄	최저임금	8,350	최저임금	8,350
돌봄 필요 성인 돌봄	최저임금	8,350	최저임금	8,350
자원봉사	최저임금	8,350	최저임금	8,350
여가활동	최저임금	8,350	최저임금	8,350

자료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KOSIS.

어진다. 가사노동의 숙련 수준이 평균적으로 여성이 더 높다고 보면,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는 절대 시간량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임금을마저 남녀 구분해서 적용하면 여성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이중으로 저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간당 임금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정액급여를 소정 실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했다. <표 2>는 경제적 가치산정을 위해 적용한 임금을 제시했다. 일반인 대체비용법에서는 직접 돌봄노동과 간접 돌봄노동에 대한 임금은 ‘가사 및 육아도우미’ 직종의 임금을 적용했다. 간접 돌봄노동 2에는 대기·감독 성격의 노동으로 가정하므로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했다. 전문가 대체비용법은 각 범주에 대한 전문가 직종의 임금을 적용했다.

### Ⅲ. 분석결과

<표 3>은 남녀 돌봄노동시간 배분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일일 평균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개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시장노동에 약 2시간을 더 투입하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 및 돌봄노동에 약 2시간 이상을 더 투입하고 있다. 자녀나 돌봄 필요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면 성별 분업에 따른 시간 배분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4>는 20세 이상 인구의 1인당 돌봄노동시간을 제시했다. 먼저 일일 평균 시간을 계산한 뒤, 365일을 곱해서 연간 돌봄노동시간을 계산했다. 남성은 연간 228시간, 여성은 598시간을 돌봄노동시간에 투입하는데, 여성의 돌봄노동시간이 약 2.6배에 달한다. 2019년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 소정실근로시간이 남성은 155.4시간, 여성은 149.6시간으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남녀 각각 1,864, 1,795시간이다. 여성은 시장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의 약 33%를 돌봄노동에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돌봄노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접 돌봄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남성이 93.4, 여성이 260.1시간, 간접 돌봄노동 1(가사노동의 일부)은 남성이 165.5시간, 여성이 606.2시간, 간접 돌봄노동 2(10세 미만 (손)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는 남성이 74.7시간, 여성이 106시간이다. 적지 않은 시간을 10세 미만 (손)자녀와 함께 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거의 직접 돌봄노동시간 만큼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적으로 가사활동이나 아동에 전념하는 신체적, 교육적 돌봄활동보다는 자신의 여가활동에 자녀를 동반하거나 자녀 중심의 여가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돌보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낸다(윤자영, 2018). 돌봄노동시간에서 가사노동과 10세 미만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제외할 경우 돌봄노동에 투입하는 총시간이 과소추정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만 15세 이상 시간 배분 실태

(단위 : 시간/일)

	만 15세 이상		만 15세 이상 (아동, 돌봄 필요 가구원이 있는 가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시장노동	5.16	2.93	6.56	2.44
개인유지	11.68	11.89	11.48	11.55
학습	0.82	0.72	0.15	0.15
가사노동	0.86	2.78	0.87	3.40
아동 돌봄	0.19	0.61	0.70	2.09
성인 돌봄	0.05	0.07	0.17	0.25
봉사여가	5.24	5.00	4.07	4.12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19」.

〈표 4〉 만 20세 이상 인구의 돌봄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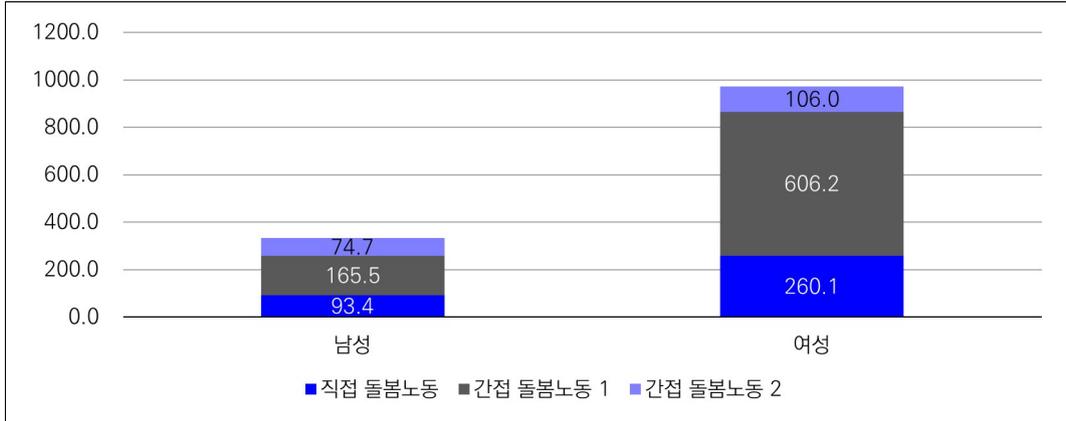
		일일(분)		연간(시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직접 돌봄노동	10세 미만 아동 돌봄	10.6	32.9	64.6	200.2
	10세 이상 아동 돌봄	1.6	5.5	9.6	33.3
	돌봄 필요 성인 돌봄	1.3	2.0	7.7	12.2
	독립적인 성인 돌봄	1.9	2.4	11.6	14.3
간접 돌봄노동 1	가사노동	9.9	38.2	60.5	232.3
간접 돌봄노동 2	가사노동	2.1	6.5	12.9	39.3
	독립적인 성인 돌봄	0.0	0.0	0.0	0.0
	돌봄 필요 성인 돌봄	0.0	0.1	0.1	0.5
	자원봉사	0.0	0.0	0.0	0.1
	여가활동	10.1	10.9	61.6	66.1
합 계		37.6	98.4	228.6	598.4

주 : 간접 돌봄노동 1은 동등화지수 적용.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19」.

추정된 연간 돌봄노동시간량을 바탕으로 〈표 2〉의 임금률을 적용하여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했다. 1인당 연간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20세 이상 전체 인구의 연간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20세 이상 인구를 1인당 연간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곱해서 전체 인구의 연간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 1인당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일반인 대체비용법에 따르면, 남성은 약 297만 원, 여성은 약 773만 원 정도에 해당하며, 전문가 대체비용법으로는 남성이 365만 원, 여성이 956만 원이다.

[그림 1] 돌봄노동시간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19」.

<표 5>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1인당(원/연간)				20세 이상 전체 인구(억 원/연간)			
		일반인 대체비용법		전문가 대체비용법		일반인 대체비용법		전문가 대체비용법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직접 돌봄노동	10세 미만 아동 돌봄	707,799	2,138,076	1,055,852	3,189,453	15,420	48,266	23,002	72,000
	10세 이상 아동 돌봄	68,097	307,679	157,795	712,959	1,484	6,946	3,438	16,095
	돌봄 필요 성인 돌봄	94,541	150,866	141,031	225,054	2,060	3,406	3,072	5,080
	독립적인 성인 돌봄	143,189	176,676	213,601	263,554	3,119	3,988	4,653	5,950
간접 돌봄노동 1	자가소비를 위한 일	16,154	30,936	16,089	30,814	352	698	351	696
	식사요리	134,329	871,047	135,221	876,831	2,926	19,663	2,946	19,794
	설거지	86,782	477,061	81,462	447,815	1,891	10,769	1,775	10,109
	세탁수선	33,990	314,335	36,509	337,628	740	7,096	795	7,622
	청소	177,151	563,751	171,699	546,402	3,859	12,726	3,741	12,335
	주거 등 관리	41,584	42,187	94,173	95,538	906	952	2,052	2,157
	구매	142,674	346,774	139,890	340,006	3,108	7,828	3,048	7,675
이동	702,460	1,432,290	790,182	1,611,153	15,303	32,333	17,215	36,371	
간접 돌봄노동 2	가사노동	107,464	328,126	107,464	328,126	2,341	7,407	2,341	7,407
	독립적인 성인 돌봄	398	91	398	91	9	2	9	2
	돌봄 필요 성인 돌봄	1,167	3,874	1,167	3,874	25	87	25	87
	자원봉사	135	1,021	135	1,021	3	23	3	23
	여가활동	514,953	552,556	514,953	552,556	11,219	12,474	11,219	12,474
합 계		2,972,000	7,735,278	3,656,657	9,560,844	64,747	174,619	79,662	215,830

주 : 만 20세 이상 인구.

자료 : 「생활시간조사 201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세 이상 전체 인구의 돌봄노동 경제적 가치는 남성의 경우 적용한 임금률에 따라 6조 4천 억~7조 9천 억 원, 여성의 경우는 17조 2천 억~21조 6천 억 원에 해당한다. 이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보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국내총생산(GDP)은 1,919,040(십억)이다. 2019년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24~1.53%에 해당한다. 통계청(2018)은 대체비용법을 적용하여 2014년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9~24.3%라고 추산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경제적 가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가 아닌 타인을 위한 돌봄노동에 한정하기 위하여 동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보수적인 수치가 산출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IV. 맺음말

우리는 상당량의 시간을 무급 돌봄노동에 할애한다. 특히 여성은 출산과 양육의 주된 책임자로서 노동시장 참가가 활발해진 후기 산업사회에도 남성보다 무급 돌봄노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의 돌봄 사회화 정책은 무상급식, 보육, 방과후 교실, 장애인 돌봄, 요양 관련 제도와 사업 등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수행하던 무급 돌봄노동의 상당부분을 공적 영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여전히 가정에서 창출하는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하다. 경제발전의 목표로 상정되는 GDP는 측정되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가 측정되는 영역으로 이동한 것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뿐이다. 비시장 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소비와 생활 수준의 불평등에서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는 가정에서 수행하는 무급 돌봄노동의 규모와 그 가치를 새삼스레 조명했다. 시장 영역은 위축되었으나, 시장이 생산하던 재화와 서비스를 가정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게 된 개인들은 가중된 노동으로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린이집, 학교, 공동체 등 영역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하자,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가정의 부모, 친지, 친구, 이웃 등이다. 긴급하게 공백에 발생한 돌봄노동을 대신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 개인과 공동체는 그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약자가 돌봄의 손길없이 방치된 채 건강과 안전을 희생당했다. 코로나19 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위한 힘을 되찾기 위해 돌봄노동이라는 보상 없는 기여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윤자영(2010), 「비시장시간과 자녀의 인적자본형성」, 한국노동연구원.
- 윤자영(2018), 「돌봄노동시간 개념과 측정 : 자녀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5(2), pp.171~200.
- 통계청(2018),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 가산노동가치 평가)」.
- Abraham, K. and C. Mackie, eds.(2004), *Beyond the Market, Designing Nonmarket Accounts for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Allard, M. D., S. Bianchi, J. Stewart and V. R. Wight(2007), “Comparing Childcare Measures in the ATUS and Earlier Time-Diary Studies,” *Monthly Labor Review* 130(5).
- Budig, M. and N. Folbre(2004), “Activity, Proximity, or Responsibility? Measuring Parental Child Care Time,” in M. Bittman et al.(eds.),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New York: Routledge.
- Chesly, Noelle and Sarah Flood(2017), “Signs of Change? At-Home and Breadwinner Parent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9(2), pp.511~534.
- England, P., M. Budig and N. Folbre(2002), *The Wages of Virtue: The Relative Pay of Care Work*.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soci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 Folbre, Nancy(2008), *Valuing Children: Rethinking the Economics of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schmidt-Clermont, L.(1993), “Monetary Valuation of Non-Market Productive Ti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9), pp.419~33.
- Juster, T. and F. Stafford(1991), “The Allocation of Time: Empirical Findings, Behavioral Models, and Problems of Measure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9(2), pp.471~522.
- Reid, M. G.(1934),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John Wiley.
- Suh, Jooyeon and Nancy Folbre(2016), “Valuing Unpaid Child Care in the U.S.: A Prototype Satellite Account Using the American Time Use Survey,”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2(4), pp.668~684.
- UNECE(2017), *Guide on Valuing Unpaid Household Service Work*,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 Yoon, Jayoung(2014), “Counting Care Work in Social Policy: Valuing Unpaid Child- and Eldercare in Korea,” *Feminist Economics* 20(2), pp.65~89.